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4,900,000	16,347,000
일반회계	456,000,000	13,680,000
특별회계	88,900,000	2,667,000
공기업특별회계	13,900,000	417,000
공기업특별회계	13,900,000	417,000
기타특별회계	75,000,000	2,25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480,000	434,400
수질개선특별회계	2,848,000	85,44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232,366	66,97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986,634	29,59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110,000	63,300
주택사업특별회계	1,560,000	46,8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510,000	15,3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800,000	54,000
치수사업특별회계	3,920,000	117,6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320,000	69,600
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0	30,0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3,000	99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1,200,000	1,236,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5,036,656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